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9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1.

발 의 자 : 박 정 · 장종태 · 이훈기

김정호 · 문정복 · 김영환

김주영 · 이용우 · 박해철

김태선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이 적용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휴직수당 또한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근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임신·출산으로 인한 교직원의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복지격차를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신설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를 “퇴직·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 및 육아휴직”으로 한다.

제33조의3을 제33조의4로 하고,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 ①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직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 원 및 사무직원의 <u>퇴직·사망</u>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u>장해</u> 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 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u><신 설></u>	제1조(목적) ----- ----- <u>퇴직·사망</u> , <u>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u> <u>및 육아휴직</u> ----- ----- ----- ----- -----. <u>제33조의3(육아휴직급여의 지급)</u> ① 「사립학교법」 제59조제1 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u>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u> <u>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u> <u>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를</u> <u>지급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u>국립학교·공립학교의 교직원</u> <u>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u> <u>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 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신청 방 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제33조의3</u> (재요양) (생략)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 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 계액으로 한다.	<u>제33조의4</u> (재요양) (현행 제33조 의3과 같음)
1. ~ 3. (생략)	제46조(국가부담금) ① ----- ----- -----.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u>육아휴직급여 지급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